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2나714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철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6. 20.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1가단511163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18. 12. 30. 체결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86,412,71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86,412,7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C의 부(父) F의 사망에 따라 C이 그의 모(母)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는바 이는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늦어도 C과 E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2019. 11. 5.에는 재산조사를 통하여 C의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5. 20.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435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E이 2018. 7. 5. 원고에게 'D의 민물장어 잔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C이 E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이 2019. 11. 5. 선고된 사실은 앞의 1.(제1심 판결 이유 1.의 나. 부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추심·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점과 당시 C이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제3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므로,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는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와 C을 공동 피고로 하여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14777), C은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고 응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5. 3.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면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394,520원 및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0.부터 2021. 6. 13.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33134), 제1심 판결은 2022. 12. 3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재산을 강제집행이나 현금화의 용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8510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갑 제2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지원과(등기정보조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8. 11. 6. 이후 이 사건 협의분할 다음 날인 2018. 12. 31.에 이르기까지 K증권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주식회사 L(L.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음) 주식 70,000주(2018. 12. 28. 기준 시장가격 8,900원으로 평가한 시장가치 총액 623,000,000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8. 12. 31. 기준 위 계좌의 현금 잔액은 5,303원이었고 그 담보대출금이 338,967,044원이었으므로 총 계좌잔고가 284,038,259원(5,303원 + 623,000,000원 - 338,967,044원)에 이르는 사실, C이 2018. 12. 1.부터 2021. 6. 2.까지 사이에 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았고, 2018. 1. 1.부터 2022. 6.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80,000,000원) 외에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또는 연체내역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을 위에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의분할일인 2018. 12. 30. 당시 C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극재산이 위 계좌잔고 284,038,259원 정도임에 반하여 피보전채권액이 80,000,000원에 불과하여 C은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형태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C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고는 1980. 3. 12. F과 혼인한 후 자녀양육 등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하였고, F은 혼인생활 26년차인 2005.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이 사건 아파트는 비록 F 단독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F과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F의 또 다른 상속인 G(C의 형)은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 무렵 C의 K증권 계좌잔고는 284,038,259원에 이르렀던 점, 여기에 ③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④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유지 및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노모인 피고의 노후 보장 등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효과와 결과에서 상속포기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니 이를 가리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게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결국, 채무자인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C에게 사해의사가 없었고 피고는 선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오연정, 판사 안승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중랑구 [] [] [] [] [] [] []

[] [] 아파트 [] 동

[도로명주소] 서울 중랑구 []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식구조기타지붕, 칼라아스팔트섬광경사지붕 12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중랑구 [] 대 3852.2㎡
2. 서울 중랑구 [] 대 334.6㎡
3. 서울 중랑구 [] 대 387.8㎡
4. 서울 중랑구 [] 대 1309.1㎡
5. 서울 중랑구 [] 대 494.9㎡
6. 서울 중랑구 [] 대 305.1㎡
7. 서울 중랑구 [] 대 277.4㎡
8. 서울 중랑구 [] 대 150.6㎡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 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74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 3852.2분의 43.62
2. 소유권 334.6분의 0.01
3. 소유권 387.8분의 0.01
4. 소유권 1309.1분의 0.01
5. 소유권 494.9분의 0.01
6. 소유권 305.1분의 0.01
7. 소유권 277.4분의 0.01
8. 소유권 150.6분의 0.01. 끝.

